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,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원문화”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및 그 소산을 말한다.
2. “마을정원사”란 서울특별시 송파구(이하 “송파구”라 한다)에서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·관리 및 보전·전시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정원박람회”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정원도시의 조성) ① 구청장은 송파구에 구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구민 복지의 증진)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, 구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정원문화의 육성 등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의 조성·운영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정원문화의 발굴·진흥 등)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·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.

1.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·수집·보급 및 관리
2.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
3.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
4.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
5.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, 행사,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
6. 소식지,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
7.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
8. 정원 캠페인의 추진
9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구민 참여의 원칙)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,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

도록 해야 한다.

② 구민의 자발적인 정원문화 활동은 지역 환경 개선, 주민 간 교류 활성화, 공동체 의식 회복 및 정원치유를 통한 정서적 안정을 지향한다.

제9조(정원문화의 확산)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송파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.

1.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개방
2.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문화 교육
3. 다양한 진흥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
4.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·법인·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0조(정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 수집·보존 및 전시
2. 정원문화 관련 교육
3. 정원 관련 체험학습, 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·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·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·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

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)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교육과정을 법인·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위탁받은 법인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마을정원사의 양성)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,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마을정원사의 운용 등)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,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,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·객관성을 위하여 외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내부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1】

관 계 법 령

❑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(약칭: 수목원정원법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목원”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·증식·보존·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,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·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.

가.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

나.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

다. 화목원·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

라.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시설

1의2. “정원”이란 식물, 토석, 시설물(조형물을 포함한다) 등을 전시·배치하거나 재배·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(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유산,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.

2. “수목유전자원”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(자생·재배 식물을 포함한다)과 그 식물의 종자·조직·세포·화분(花粉)·포자(胞子)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·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.

3. “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”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·관리 및 보전·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.

4. “희귀식물”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·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.
5. “특산식물”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.
6. “정원산업”이란 정원용 식물,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·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7. “정원치유”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·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.

제18조의14(박람회 등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의15(정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
2.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
3.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·보존·전시
4.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18(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)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.